

윤리규정

beyond the best
금호폴리켄

금호폴리켄은 고객, 주주, 임직원, 인류, 환경을 위해 사회와 회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기업윤리를 최우선으로 실천하여 최고를 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실천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대상)

회사의 임직원은 고객, 주주, 거래처, 임직원, 지역사회, 정부 등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이 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제2조 (임직원의 의무)

- 1)회사의 전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법령,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 받게 된다.
- 2)회사의 전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을 강요 받은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위 관리자 및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속히 보고 해야 한다.
- 3)회사의 전 임직원은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을 몰랐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의문사항이나 위반 우려가 있을 경우 상위 관리자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제2장 고객 및 거래처에 대한 윤리

제3조 (고객 존중)

- 1)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한다.
- 2)고객에 대한 정보는 회사 자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로써 보호하고,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4조 (고객가치 창조)

- 1)기존의 관행과 성공방식을 깨는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 2)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제5조 (공정한 거래)

- 1)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거래조건 및 절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 2)신규 업체가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고자 원하는 때에는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거래처를 선정, 등록하여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 3)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정한 금품이나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한다.

- 4)회사의 잘못으로 거래처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정하게 배상한다.
- 5)구성원은 경조사 또는 사적인 목적으로 고객,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6)정기적으로 협력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에 적절히 반영한다.
- 7)공정거래와 관련하여 법규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 8)마케팅 및 라벨링에 대한 국제적 규범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6조 (자유경쟁 추구)

회사는 부패방지, 공정경쟁 등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켜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반경쟁적 악습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상호 발전 추구)

회사의 전 임직원은 협력업체가 회사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 노하우 전수에 노력한다.

제3장 주주에 대한 윤리

제8조 (이익 보호 및 권리 보장)

- 1)회사의 전 임직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이익 극대화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2)회사는 회사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과 재무상태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3)회사는 회사경영에 관한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주주에게 회사의 정보를 충실하게 공시한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9조 (구성원 존중)

- 1)회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 2)회사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 3)회사는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꿈의 일터를 만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10조 (공정한 대우)

- 1)회사는 고용, 승진, 보상, 교육 등에 있어 성별, 학력, 나이, 종교, 출신지역 등 비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차별하지 않는다.
- 2)회사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 공정하게 대우하고 보상함

으로써 업무 성취 동기를 높여야 한다.

제11조 (인재 육성)

회사는 구성원에게 희망, 적성, 능력을 고려하여 직무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구성원의 기본 윤리)

- 1)회사의 전 임직원은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며, 고객과 거래처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2)구성원은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3)구성원은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폭행, 사기,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되며, 사업장내에서 음주, 도박, 사행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4)구성원간 금전거래, 연대보증, 선물 수수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단, 경조사 발생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행하는 부조금은 제외한다.

제13조 (사명의 완수)

- 1)구성원은 사내외에서 정정당한 실력으로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하며, 능동적인 자세와 창의적인 사고로 각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완수한다.
- 2)구성원은 동료 및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 성과와 효율을 최대한 높인다.
- 3)구성원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14조 (공정한 직무수행)

- 1)구성원은 모든 직무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수행하며, 고의로 문서 및 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는 하지 않는다.
- 2)구성원은 권한과 책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

제15조 (이해상충 회피)

- 1)구성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구성원은 사전보고 및 승인없이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하지 않는다.
- 3)구성원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자산, 금전 기타 이득을 받거나 상호 대차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16조 (회사 자산의 보호 및 보안 유지)

- 1)구성원은 회사의 모든 유무형 자산을 사업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 2)구성원은 회사의 재산, 비품, 자재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3)구성원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일체의 정보는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적극 보호하고, 퇴사 이후에도 영구히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 4)구성원은 회사의 주가나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사전 허가 없이 유출하거나, 주식투자 등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 5)구성원은 컴퓨터 및 각종 기기의 사용에 있어 회사의 정보유출 방지에 최대한 노력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17조 (합리적 사업전개)

회사는 사회적 가치관, 거래의 관습 및 질서를 존중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부를 창출한다.

제18조 (사회발전에 기여)

- 1)회사는 일자리 창출 및 성실한 납세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를 적극 배려한다.
- 2)회사는 사회 각계 각층과 지역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제19조 (정치활동 관여 금지)

회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후원하지 않으며, 다른 임직원에게 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단,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제20조 (환경 및 안전)

- 1)회사는 환경관련 법규 및 국제 협약을 준수하고,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 오염, 훼손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한다.
- 2)회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공해 방지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고 운용한다.
- 3)회사는 안전 조업을 위하여 관련 법규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저해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것에 최대한 노력한다.
- 4)구성원은 사업장 내의 정리정돈을 생활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제6장 윤리경영 운영

제21조 (담당 조직)

- 1) 윤리경영 담당 임원은 경영층을 대신하여 윤리경영 실천방안 수립, 시행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한다.
- 2) 윤리경영 담당 조직은 윤리경영 제도/시스템의 입안, 조정, 운영, 감독 등 회사의 전반적인 윤리경영 업무를 수행한다.

제22조 (윤리경영 교육 및 평가)

윤리경영 담당 임원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윤리경영 교육·지도·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23조 (시행)

구성원은 본 윤리규정 및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중징계 처리한다.

<부칙>

제1조 (시행시기)

본 윤리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타 규정과의 관계)

윤리규정 및 윤리경영 실천 지침은 회사내 다른 규정에 우선한다.